

- 2007. 2. 28 제정
- 2008. 2. 26 개정
- 2009. 9. 4 개정
- 2013. 2. 19 개정
- 2015. 2. 25 개정
- 통합체육회 발족 ● 2016. 2. 28 승계
- 2018. 2. 26 개정
- 과천시체육회 규약 전부개정 ● 2019. 8. 29 개정
- 2020. 2. 19 개정

# 과천시체육회 사무국 직제규정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기구 및 정원	
제 3 장	업 무 분 장	

## 과천시체육회 사무국 직제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천시체육회 규약 제50조에 의하여 과천시체육회에 두는 사무국의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과 기타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과천시체육회 사무국 (이하“사무국”이라 한다)의 직제와 정원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 사무국 직원의 인사, 보수, 복무, 여비지급 등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관련 법령과 규정에 준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심의 의결로 정한다.

### 제2장 기구 및 정원

**제3조(과의 설치)** ① 사무국에는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영기획과와 체육진흥과를 두고, 경영기획과내에 경영지원팀과 체육육성팀, 체육진흥과내에 지역진흥팀과 지도운영팀을 둔다.

② 사무국의 기구와 정원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제4조(사무국장·직원의 직급 및 직위)** 사무국장은 일반임기직 1급~2급으로 경영기획과장, 체육진흥과장은 일반직 3급~4급, 직원은 그 직위에 따라 5급~9급으로 각각 보하고, 직원의 직급 및 직위는 “별표3”과 같다.

**제5조(기구의 개편 등)** 사무국의 기구 설치·개편 및 정원의 조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직원)** ① 직원은 일반직 · 계약직으로 구분한다.

② 직원의 직군과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 : 사무국의 일반 업무를 담당하는 체육회 1급 내지 9급으로 구분하며 직급에 따라 국장, 과장, 팀장, 대리, 주임, 직원으로 직위를 나눈다.
2. 계약직 :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익목적의 프로그램 운영지도자와 대한체육회 규정에 의해 채용, 배치된 일반,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및 전문(엘리트) 체육육성을 위하여 본 회에서 지원하는 학교 및 합동운동부 지도자를 말한다.

**제7조(직무대행)** 사무국장 유고시에는 경영기획과장, 체육진흥과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장 업무분장

**제8조 (경영기획과)** 경영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총괄한다. 단, 세부업무 등은 과장이 보내 팀별로 지정 및 분장한다.

1. 인사, 예산, 회계, 서무, 복무
2. 각종 제도 및 전산 관리
3. 사무국 자산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4. 시장기, 의장기 체육대회 개최
5. 전문(엘리트) 및 학교 체육
6. 이사회, 총회 운영
7. 체육회 회원 및 종목단체 관리
8. 전국 및 도민체전, 도생활체육대축전 관리
9. 기타 체육회 관장 사무 및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

**제9조(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총괄한다. 단, 세부업무 등은 과장이 보내 팀별로 지정 및 분장한다.

1. 각 종목 협회장기 대회 개최
2.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3. 생활체육 지도자 관리

4. 전국 및 도 단위 생활체육 대회 관리
5. 생활체육 관장 사무
6. 기타 생활체육 관련 업무

**제10조(업무의 분장구분)** ① 제6조 제2항에 따라 일반직 업무와 타부서의 업무를 계약직에게 분장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직군의 별도규정에 따라 분장할 수 있으나 단순지원 업무 외 직군 간 업무는 명확하게 구분하여 지정한다.

② 지도운영팀의 행정지도자 제도를 운영할 경우, 회장의 승인을 통해 해당팀의 고유사업 관련 일반직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 외에 타부서에 속하는 업무는 행정지도자를 포함한 계약직에게 분장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업무를 지원할 경우의 최종 책임권한은 해당업무의 일반직 직원으로 한다. 단, 상기 1항, 2항을 포함하여 회장이 필요로 할 경우, 3개월 내 업무분장을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18. 2. 26>

부 칙 <제정 2007. 2. 28>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기구와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당시 설치 및 확정된 사무국의 기구와 정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 및 책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8. 2. 26>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 9. 4>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 2. 19>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 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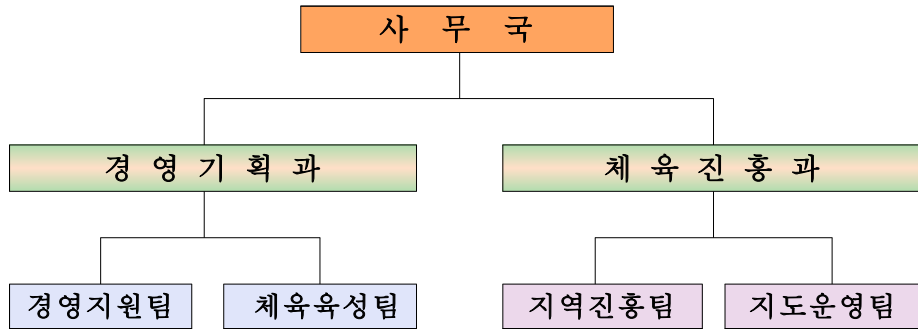
부 칙 <개정 2015. 2. 25>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기구와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설치 및 확정된 사무국의 기구와 정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 및 책정된 것으로 본다.
- ③ 이 규정 시행 당시 근무중인 직원은 본 규정에 의하여 발령된 것으로 본다.

- ① (시행일) 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8. 2. 26 개정)
- ② (기구와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시행 당시 설치 및 확정된 사무국의 기구와 정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 및 책정된 것으로 본다.
- ③ 이 개정 규정 시행 당시 근무중인 직원은 본 규정에 의하여 발령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사무국기구표



[별표 2]

사무국정원표

부서별	직종별	체육회 직급	정원
계			8
사무국장	일반임기직	1 ~ 2급	1
경영기획과	일반직	소 계	4
		3 ~ 4급	1
		5 ~ 7급	2
		8 ~ 9급	1
체육진흥과	일반직	소 계	3
		3 ~ 4급	1
		5 ~ 7급	1
		8 ~ 9급	1

※ 동 규정 제6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계약직(일반, 아르신지도자)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원을 책정한다.

[별표 3]

체육회 (자체) 직급

직 위	직 급	비 고
국 장	1 ~ 2급	
과 장	3 ~ 4급	
팀 장	5 ~ 6급	
대 리	7급	
주 임	8급	
직 원	9급	

- 2013. 2. 19 제정
- 2015. 2. 25 개정
- 통합체육회 발족 ● 2016. 2. 28 승계
- 2016. 8. 26 개정
- 2017. 2. 8 개정
- 2018. 2. 26 개정
- 2019. 2. 26 개정
- 과천시체육회 규약 전부개정 ● 2019. 8. 29 개정
- 2020. 2. 19 개정

# 과천시체육회 사무국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채	용 및 승진
제 3 장	복	무
제 4 장	급	여
제 5 장	상	벌
제 6 장	퇴	직 금
제 7 장	재	해 보 상
제 8 장	문	서 처 리
제 9 장	예	산 및 회 계
제10장	물	품 관 리

## 과천시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과천시체육회(이하 “본 회”라 한다) 규약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천시체육회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임원을 제외한 본 회의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

### 제2장 채용 및 승진

**제3조의 1(채용)** ①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회장이 정하는 전형방법 의하여 채용할 수 있다.

1. 해당직에 대한 채용 후보자가 채용 인원수에 미달될 때
2. 직무의 성질상 고시선발 방법이 적당하지 아니할 때
3.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차하위 승진대상 직원이 자격이 있을 경우 내부 승진할 수 있다.

**제3조의 2(사무국장의 채용)** 사무국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할 때는 회장의 재임명이 있어야 한다.

**제3조의 3(신규채용자 임용기준)** ①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신규 채용자격 기준표(별표 1호)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자격기준은 공무원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회장은 직원의 인사 사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5조(구비서류)**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1. 이력서 1통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자격증명서(필요한 경우 성적증명서 첨부) 1통
3. 병적확인서 (병역미필자에 한함) 1통
4. 경력증명서 (필요에 따라) 1통
5. 주민등록 등초본 1통
6. 서약서 (별표 2호) 1통
7. 사진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명함판) 3매
8. 신체검사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규정에 의함) 1통

**제6조(자격규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 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7조의 1(임면)** 직원의 임면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한다.

**제7조의 2(승진)** ① 승진은 직급이 상승하는 것을 말하며, 한번에 1개 직급을 상승할 수 있다.

② 승진은 근속년을 기준으로 승급연한제에 따라 승진하며, 직급, 직위에 따른 승진연한 기준은 다음 표과 같다. 다만, 회장이 인정하는 경우 과장, 팀장 승진시에는 차하위 2개 직급대상자 2배수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평

가를 통해 근속년과 무관하게 승진시킬 수 있다.

직 급	직 위	승급연한
1 ~ 2급	국 장	-
3 ~ 4급	과 장	없음/3년
5 ~ 6급	팀 장	5년/5년
7급	대 리	6년
8급	주 입	2년
9급	직 원	2년

③ 제3조의1 2항 단서에 따라, 결원시 내부 승진을 우선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의 3(직급 및 직위)** 체육회 직원의 직급 및 직위는 별표3과 같으며, 이는 공무원 직급 및 직위와는 별도의 자체 기준이다.

**제8조(정원)** ① 사무국의 정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정한다.

② 사무국의 정원은 (별표 3호)와 같다

**제9조(교육 및 평가)** 직원의 자질과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의 자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7조의 2와 관련한 근무평가 기준과 제도를 따로 정하여 매년 운영할 수 있다.

### 제3장 복 무

**제10조(직원의 임무)** 직원은 본 회의 사명을 인식하고 규약 및 제 규정을 준수하며 상사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함은 물론 직원 상호간의 신의를 존중하고 품성을 연마하여 본 회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상 지시한 기밀을 지키고 본 회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11조(금지사항)** 직원은 회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업이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12조(성실의 의무)** 직원은 관계법규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복종의 의무)**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14조(직장이탈 금지)** 직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15조(친절·공정의 의무)** 직원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한 직무처리에 있어 사무국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정성을 해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비밀 엄수의 의무)**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7조(청렴의 의무)**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제18조(품위 유지의 의무)** 직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근무시간)**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다만, 사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 조정을 통해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의 1(근무)** ① 직원은 늦어도 근무시간 5분전까지 출근하여 정각부터는 집무에 임하여야 한다.

② 직원이 질병 등 사유로 결근, 지참 또는 조퇴할 때에는 상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직원이 근무시간 중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기재하여 상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의 2(근무배치)** ① 사무국 직원의 근무배치는 사무국 직제규정의 별표2와 같다.

② 사무국장을 제외한 사무국 직원은 같은 업무에 계속하여 3년 이상 배치하지 않도록 하여 업무에 효율을 기하며, 회계직원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배치할 수 없다. 다만, 회장이 인정하는 경우 회계직원을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생활체육지도자는 지도운영팀에 배치하고 지도자 중 5년 이상 근무한 자를 팀장으로 둘 수 있으며, 행정지도자를 제외하고는 (동일지도자를 팀장으로) 2년 이상 배치할 수 없다.

**제21조(공휴일)** 정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휴가의 종류)** ① 직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연가는 공무원에 준한다.

1. 사무국장은 직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직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 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직원의 연가원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 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공무상 규정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직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3. 결근,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 병원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

2.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제9항 제3호, 제4호 규정에 따른 휴가 실시

④ 제2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며, 본회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무로 인한 결근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산입한다.

⑥ 병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2월의 범위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 중일 때에는 그 기간을 6월의 범위에서 허가 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인하여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2.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집무할 수 없을 때

⑦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⑧ 공가는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병역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의 경우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천재지변, 교통차단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 할 때
6.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⑨ 특별휴가는 다음과 같다.

1. 경조사 휴가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일
	자녀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출 산	배우자	5일
입 양	본인	20일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일

다만, 휴가를 실시함에 이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2. 임신 초기 여성 직원은 모성보호를 위해 출산 전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3. 임신중의 여성 직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에 90일의(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의 되게 하여야 한다.

4.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 (한번에 둘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급여를 지급한다.
5. 출산전후 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6. 여성 직원은 월1회의 무급 생리휴가와 임신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무급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7.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직원은 동 대학 설치령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2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8.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직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3조(육아휴직)** ① 직원이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 하여야한다. 단,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③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직원을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 ⑤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24조(출장)** ① 직원이 공무로 평일에 출장할 때에는 출장명령을 받아야 하며, 출장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 운영방침을 따른다.

② 출장용무에 의하여 당초 목적지·지정기일 등의 변경 및 신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고 귀임 즉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출장자가 귀임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복명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나 간단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두로 복명할 수 있다.

**제25조(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공무 이외의 질병 또는 상해로 말미암아 병가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였거나 공무로 인한 상해로 병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였을 때

2. 전염병 감염으로 타 직원의 건강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3.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을 때. 단, 육아휴직의 관한 사안은 공무원 규정을 준용한다.

4. 직제와 정원의 조정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되었을 때

5.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②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제1, 2호의 경우는 1년 이내로 한다.

2. 제1항 제3호의 경우는 만 6개월로 하고 기간 내에 복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휴직기간중의 보수는 다음과 같다.

1. 제1항 제1,2,3호의 경우에는 봉급의 7할.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 공무상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한다.

2. 제1항 4호의 경우에는 공무원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26조(퇴직)** ①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원을 제출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직원이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27조(근로기간 및 정년)** ① 직원의 근로기간 연한(정년)은 만60세이다. (사무국장 제외)

② 위 사안에 연령에 도달한 해당직원은 생년월일 6월 이전자는 6월 30일, 7월 이후자는 12월31일에 당연 퇴직한다.

**제28조의 1(직위해제)**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위를 부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3.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명된 때에는 회장은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동안 대기를 명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기회부여 등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의 2(직위해제 기간 중의 봉급감액)**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제28조의 3(직권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회장은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때
  3. 본회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5.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6. 당해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7. 제28조의 1의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될 때
  8. 기타 이 규정이 별도로 정하고 있을 때
- ② 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로 한다.

**제28조의 4(처분사유 통보)** 직원에 대하여 직권면직 처분을 행할 때에는 회장은 그 처분의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지도점검)** ① 체육회는 년 1회 이상 회계서류 및 복무상태 등 상급 기관의 지도·점검을 받는다.

② 체육회는 보조금 지원 단체에 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 제4장 급 여

**제30조(급여구분)** 직원에 대한 보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무국장은 연봉제를 적용할 수 있다.

1. 기본급
2. 상여금
3. 수당 등

**제31조의 1(급여계산)** ① 급여는 임명, 전보, 승진, 승급 또는 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모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며 실지 근무일수에 의하여 일할 지급한다.

②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 또는 해직될 때에는 그 월분의 급여전액을 지급한다. 이외 사안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한다.

③ 급여의 지급기간 계산은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공휴일의 휴무는 출근일수에 산입한다.

④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은 별표 3호에 따라 책정하되,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방침을 받아 지급한다.

**제31조의 2(급여책정)** ① 직원은 기본연봉을 계약하여야 하고, 기본 연봉 계약은 매 연간단위로 재계약한다.

② 급여의 책정은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자체 방침에 의해 결정한다.

**제32조(지급일)** 급여는 20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직원이 퇴직하였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무국장의 재량으로 그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33조(봉급감액)** 본 규정에 의한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일수를 제외하고는 결근한 자에게는 매 결근1일에 대하여 봉급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 제5장 상 별

**제34조(포상)**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회장이 이를 포상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에 근면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
2.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곤란한 업무를 수행한 자
3. 인사위원회 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포상하기로 결정한 자

**제35조(징계사유 등)**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징계할 수 있다.

1. 법령, 정관, 기타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 3. 본 회의 명예훼손, 기밀누설 또는 규율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
-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본 회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 5. 기타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

② 사무국 직원의 징계 및 소청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③ (삭 제)

제36조 (삭 제)

제37조 (삭 제)

제38조 (삭 제)

제39조 (삭 제)

제40조 (삭 제)

제41조 (삭 제)

제42조 (삭 제)

제43조 (삭 제)

## 제6장 퇴직금

제44조(퇴직금) ① 사무국 직원으로서 1년 이상 재직한 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 퇴직연금 가입으로 인하여 특별한 사유가 반영되지 않는 한 퇴직시에만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기금조성) ① 퇴직기금은 본 회의에서 기여하는 퇴직적립금의 원금과 이자로서 조성하며 이를 별도로 계정한다.

② 본 회의 퇴직적립금은 본회 정원에 의한 매 회계연도 급여예산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6조 (지급기준) ① 퇴직금은 근속 1년당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② 월평균임금이라 함은 퇴직한 달이 속하는 해의 연간 보수총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③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퇴직금의 지급을 보류한다.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그 퇴직금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47조(근속연한 계산) 근속연한은 발령일부터 기산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날까지의 연수를 계산한다.

제48조(근속결격) 휴직 및 정직기간은 근속연한에 통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무연한에 통산한다.

제49조(수령권자) 퇴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유족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중 유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지급일) 퇴직금의 지급은 퇴직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그 금액을 지급한다.

## 제7장 재해보상

제51조(보상) ① 업무상 원인으로 불구가 되어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직원이 공상을 입었을 시 그 치료 및 입원에 관하여는 보험가입 등 본 회의에서 조치한다.

## 제8장 문서처리

제52조(결재) ① 문서는 사무국의 직제순서에 따라 결재를 받아야 하며 주요한 사항은 과장, 사무국장, 회장 순으로 결재를 받아 이를 시행하며, 시 문화체육과 협조사항은 회장 결재 전 사전 협의한다.

②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결재하며 수석부회장 유고시에는 사무국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고 후열을 받아야 한다.

③ 본 회의 위임 전결규정은 별도로 이를 정한다.

**제53조(관리근거)** ① 본 회의 사무관리는 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공식 구축된(경기도체육회 그룹웨어) 전자문서(결재) (이하 “전자문서”라 한다) 시스템을 포함한다.

② 구두 또는 전화로서 접수된 사항은 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54조(문서의 종류)** 이 규정에서 말하는 문서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에서 대내·외적으로 업무상 왕복되는 일체의 서류
2. 전자문서(시스템 포함), 전화, 통신, 전보 및 각종 기록, 도표, 간행물과 기타 도서류 일체

**제55조(문서의 접수·처리)** ① 접수한 모든 문서는 경영기획과에서 문서과용 문서접수대장에 기재하고 주무과에 배부한 후 수령인을 받아야 하며, 전자결재의 경우도 전과 같이 시스템 상 운영한다.

② 친전문서 및 금전 기타 귀중품이 첨부된 문서도 전 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근무시간외 또는 휴일에 도착한 문서는 근무자가 접수하여 총무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것은 주무과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배부 받은 문서가 주관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총무과에 반송하여야 하며 당사자 간에 직접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주무과에서 문서를 배부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안(문서 또는 전자문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⑥ 타 과와 합의한 사항으로서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합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6조(문서의 발송)** ① 발신 문서의 발신자는 회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연락의 준공문서에 국한하여 사무국장 명의로 발송할 수 있다.

② 모든 기안문서는 주무팀에 비치된 문서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며,

시행문으로 작성 발신되는 문서는 주무과의 문서등록대장과 기안문 및 시행문을 경영기획과에서 확인 후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대장 저장의 경우도 같은 효력을 갖는다.

③ 발신문서에는 문서번호, 시행 년, 월, 일 및 본문 제목과 발신자 직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도 유효하다.

**제57조(문서의 성립과 효력 발생)** 문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문서에 대한 결재를 필함으로서 성립되고 상대방에게 접수됨으로서 문서의 효력을 발생한다.

**제58조(문서보관)** 본 회 문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보관한다.

1. 영구보존문서 : 규약, 제 규정, 총회 회의록, 인사관계 서류, 표창 및 징계대장, 물품관리대장, 각종 경기대회 기록 등
2. 5년 보존문서 : 본 회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서, 경리관계 서류 및 장부
3. 기타 문서는 정부 공문서 보관, 보존규정을 준용한다.
4. 전자문서의 저장 보관의 경우, 1호부터 3호에 준하되, 추가 보존할 수 있다.

**제59조(사무인계)** ① 직원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직할 때에는 소관 담당업무를 동일자로 마감하고 사무인계서 3부를 작성하여 직속 상급자의 확인을 받아 인계 인수자가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경영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에 해당기능이 있을 시 대체할 수 있다.

② 금권 또는 물품의 출납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현금, 예금 또는 물품현황과 그 인계할 장부 및 증빙서류와 함께 일건서류의 목록 기타 필요한 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후임자는 관계 출납직원 입회하에 현물과 대조하여 현 재고 조서 및 목록에 인수 년월일을기입하고 전임자, 후임자 및 입회자가 서명날인한 후 각 1부를 소지하고 1부는 회장의 결재를 받아 경영기획과에서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장 예산 및 회계

**제60조(적용)** 본 회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계되는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1조(세입·세출의 정의)** 회계년도 내의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고, 이에 필요한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제62조(재산의 취득처분)** 본 회의 전세금, 공작물 기타 본회 소유 시설물 등을 기본 재산으로 하고 본 회의 재산은 이사회의 결의 없이는 취득, 처분, 교환 또는 대부 할 수 없다.

**제63조(출납기한과 회계년도 소속구분)**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서 12월 31일에 끝나며, 이외 출납 폐쇄기한, 출납사무 완결기한, 및 세출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4조(회계의 구분)** ① 본 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계는 일반적인 본회의 활동에 관한 세입 세출을 포함하며,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또는 특정한 사업으로 특정한 세출에 지출함으로써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 이사회의 결의로서 설치한다.

**제65조(예산총계주의 원칙)** 세입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66조(예산통제의 내용)** 예산 통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예산의 편성
2. 예산의 집행
3. 예산과 실적과의 비교 및 차이 분석
4. 예산차이 분석결과에 의한 개선 조치

**제67조(예산통제의 원칙)** ① 예산의 통제는 원칙적으로 금액통제에 의하되 필요할 때에는 수량통제 및 단가통제를 병용할 수 있다.

② 모든 지출은 사전에 예산통제를 받아야 하며 예산 초과지출은 일체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68조(예산의 구분)** ① 세입세출예산은 필요할 때에는 성질에 따라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세입예산은 전 항의 구분에 의하여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항으로 구분하고 지출예산은 전항의 구분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능별, 성질별로

관·항·목으로 구분한다.

**제6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부득이한 경우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으며 이를 집행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0조(명시이월비)** 세입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그 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것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1조(추가경정예산)**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장의 재가를 받아집행하고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2조(예산성립전의 예산집행)** ① 회계년도 개시일로부터 이사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의 예산 불성립 기간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준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해당 년도의 예산이 성립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3조(예산의 목적의 사용금지과 예산 이체)** 세입세출예산은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로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 관·항간에 상호사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제74조(예산의 전용)** ① 예산집행 중 세항이하의 과목 간 과부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제외하고는 사무국장의 전결로서 세항 간 전용 처리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관과 항간의 과부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 문화체육과장의 사전 협의를 득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1. 인건비를 다른 비목으로 전용
2. 다른 비목에서 업무추진비로 전용

②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출 결산보고서에 명백히 하는 동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75조(회계관직의 지정)** 본 회 출납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징수관 : 사무국장
2. 경리관 : 사무국장
3. 채권관리관 : 사무국장
4. 채무관리관 : 사무국장
5. 지출원 : 사무국장
6. 물품출납원 : 회계담당직원
7.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 회계담당직원

**제76조(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매 회계년도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결산보고서 및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7조(세입세출결산의 총회 제출)** 회장은 감사의 감사를 거친 세입세출결산서를 익년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8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① 본 회의 제 세입은 징수 또는 수납할 자격을 가진 직원(이하 ‘세입징수원 및 수납원’이라 한다.)이 아니면 징수 또는 수납할 수 없다.

② 세입징수원 및 수납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전 항의 직원이 수납한 제 세입은 수입결의서에 의하여 지정된 은행에 지체 없이 예치하여야 한다.

**제79조(자금관리)** 본 회의 자금은 시중은행에 예치한다.

**제80조(예산집행품의)** 세출예산을 집행코자 할 때에는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장은 전결규정을 정하여 사무국장에게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선급금과 개산금)** 지출원은 운임, 여비, 기타 정부예산회계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선급금 또는 개산금으로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급금 또는 개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2조(계약)** 매매, 임차, 도급 기타의 계약행위는 지방재정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준한다.

**제83조(장부의 비치)** 본 회의는 경리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세입(수입)징수에 관한 장부
2.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장부
3. 지출에 관한 장부
4. 현금출납에 관한 장부
5.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
6. 기타 회계에 관한 장부

**제84조(회계관계 직원의 책임)** ① 회계관계 직원은 재정보증을 필하지 아니하고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회계관계 직원은 한도액 1천만원의 재정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 또는 물품을 취급하는 출납원 등 회계 관계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서 본회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상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선량한 회계직원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5조(준용)** 국고 및 시비 보조금을 취급하는 경리사항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의 예산회계법과 지방재정법 및 동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준한다.

## 제10장 물품관리

**제86조(물품관리의 정의)** 이 규정에서 물품관리라 함은 본회 사업을 위한 모든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등의 물품관리 행위를 말한다.

**제87조(취급)** 물품의 취급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물품의 청구(구입 또는 수리, 제작) 또는 검수나 보관에 있어서는 주무팀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물품조달은 일정한 물품 수급계획을 세워서 재고량과 수급량을 파악하여 유휴 물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3. 물품은 창고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에 보관하여 분실, 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물품의 출납은 반드시 정확하게 장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5. 물품은 분기말 또는 연말에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장부와 대조하여야 한다.
6. 항상 사용하는 물품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구입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물품 취급에 있어서 감실,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상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88조(검수)** 구입 또는 수리, 제작으로 인한 취득물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검수하여야 한다.

1. 회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직원은 물품의 수량, 품질 및 규격이 계약서 등 관계서류에 명시된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스스로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임하여 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 검수결과 계약조건과 상이하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대납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검수된 물품에 대하여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입고하는 동시에 당해 물품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9조(보관)** 물품은 다음과 같이 보관하여야 한다.

1. 화재, 침수, 도난 및 부식을 방지하고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보온, 냉동, 방습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창고에는 환기, 통풍, 채광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위험물은 별도 창고에 보관하여 사고에 각별한 유의를 하여야 하며, 특히 폭발물 저장에 있어서는 법령으로 정한 장소에서 지정된 자가 취급하여야 한다.

**제90조(불용품)** 불용품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장외품 중 사용할 수 없게 된 폐품
2. 자산에 계상되어 있는 불용품으로서 폐품으로 인정되는 물품
3. 저장품 중 유희품으로서 장래 사용하지 아니 할 물품

4. 철거 자재로서 훼손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한 물품
5. 기타 장기사용 등의 사유로 사용 불가능한 물품

**제91조(처분)** ① 물품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공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초과한 최고 입찰자에게 매각하여야 한다.

② 기본재산을 제외한 물품의 처분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이 결정한다.

**제92조(재물조사)** 물품관리원은 재물 조사를 격년제로 실시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 상사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3조(변상)** ① 물품출납원이 소관물품을 관리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본회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 물품을 사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

#### 부 칙 <제정 2013. 2. 19>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예산과 결산, 회계, 수입과 지출, 계약 물품관리 등 회계관계 사무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관계법령 등을 준용하며, 직원의 인사 및 복 무에 관하여는 경기도체육회 처무 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근무 중인 직원은 본 규정에 의하여 발령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개정 2015. 2. 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예산과 결산, 회계, 수입과 지출, 계약 물품관리 등 회계관리 사무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관계법령 등을 준용하고, 직원의 인사, 복부에 관하여는 경기도체육회 처무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시행 당시 근무중인 직원은 본 규정에 의하여 발령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개정 2016. 8. 26>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준용)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예산과 결산, 회계, 수입과 지출, 계약 물품관리 등 회계관리 사무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관계법령 등을 준용하고, 직원의 인사, 복부에 관하여는 경기도체육회 처무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4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근무중인 직원은 본 규정에 의하여 발령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개정 2017. 2. 8>

제1조(시행일) 1.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의 시행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6. 8. 26 개정)

4.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7. 2. 8 개정)

제2조(준용)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예산과 결산, 회계, 수입과 지출, 계약 물품 관리 등 회계관리 사무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관계법령 등을 준용하고, 직원의 인사, 복부에 관하여는 경기도체육회 처무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근무 중인 직원은 본 규정에 의하여 발령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개정 2018. 2. 26>

제1조 (시행일) 1.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의 시행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6. 8. 26 개정)

4.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7. 2. 8 개정)

5.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8. 2. 26 개정)

제2조(준용)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예산과 결산, 회계, 수입과 지출, 계약 물품 관리 등 회계관리 사무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관계법령 등을 준용하고, 직원의 인사, 복부에 관하여는 경기도체육회 처무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근무 중인 직원은 본 규정에 의하여 발령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개정 2019. 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과천시체육회 신규채용자 자격기준표

구분		자 격 기 준
일반직	국 장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6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한 자. 2.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업무분야에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자. 3. 학력, 경력과 자격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직급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거나 과천시체육회장이 특별한 사유에 한하여 인정되는 자. ※ 단, 신규직원 채용 시 과천시 거주자로 관내 1년 이상의 주민등록이 등재 된 자에 한한다.
	과 장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7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한 자. 2.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업무분야에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자. 3. 학력, 경력과 자격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직급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거나 과천시체육회장이 특별한 사유에 한하여 인정되는 자.
	팀 장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8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한 자. 2.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업무분야에 7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자. 3. 학력, 경력과 자격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직급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대 리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9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한 자. 2.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업무분야에 4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자. 3. 학력, 경력과 자격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직급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주 입 직 원	1.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업무분야에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자. 2. 정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소지자. 3.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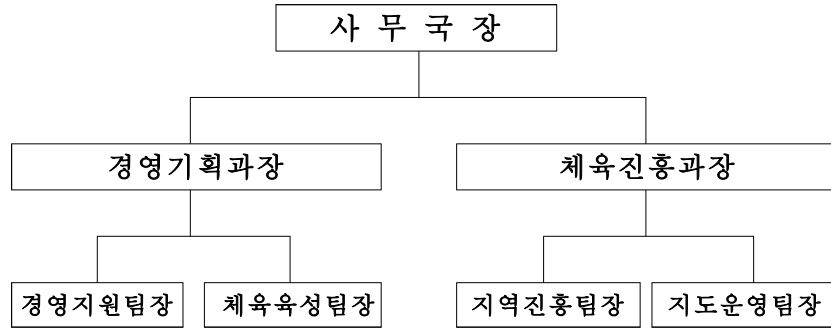
서 약 서

<b>사무국 직원 서약서</b>			
성 명		주민번호	
소 속		직 위	
주 소			
연락처		근무년월일	
<p>상기 본인은 사무국 직원으로 근무함에 있어서 귀 회 규약 및 제 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상사의 명에 따라 성실히 복무하여 귀 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만일 이에 위반되는 일이 있을 때에나 임명권자 또는 지도·감독자의 판단에 의한 책임자가 아니라 생각되어 여하한 처분이 있더라도 이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p>			
<p>20    년    월    일</p>			
성명(서약인)		(인)	
<p><b>과천시체육회장 귀하</b></p>			



<별표 3호>

사무국기구표



사무국정원

직 위	체육회 직급	인 원	비 고
계		8	
사무국장	1 ~ 2급	1	
경영기획과장	3 ~ 4급	1	
체육진흥과장	3 ~ 4급	1	
팀 장	5 ~ 6급	5	
대 리	7 급		
주 임	8 급		
직 원	9 급		

사무국 직원 급여기준 구분표

직 위	체육회 직급	적 용 기 준	비 고
사무국장	1 ~ 2급	연봉제	
과 장	3 ~ 4급	공무원 6 ~ 7급 상당	
팀 장	5 ~ 6급	공무원 8 ~ 9급 상당	
대 리	7 급		
주 임	8 급		
직 원	9 급		

<별표 4호> (삭 제),

<별표 5호> (삭 제),

<별표 6호> (삭 제),

<별표 7호> (삭 제),





[앞 면]

# 신 원 진 술 서

※ 모든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진  
(3cmx4cm)

①성 명	한 글	홍길동		②주민등록 번호	82**** - *****	
	한 자	洪吉東				
③등록기준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33				⑥연 락 처	자 택 : (02) 124-5679 직 장 : (02) 123-4567, 휴대폰 : 010-223-344 E-mail : abc@hanmail.net
④주 소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77					
⑤직 장	직장명 : 과천 개발공사(주) 소재지 : 과천시 중앙로 99					
⑦신 장	175 cm	⑧체 중	70 kg	⑨혈액형	AB형	
⑩특 기	바둑, 배드민턴		⑪취 미	여행, 독서		
⑫본인 및 배우자 재산	부동산 : 30,000 만원,		동산 : 1,000 만원			
⑬정당 및 사회단체 활동관계	단 체 명	기 간	직 책	활 동 내 용		
	해당없음	. . . ~ . . .				
⑭병 역	군 별	병 과	최종계급	군 번	기 간	미 필 사유
	육군	보병	병장	04-111111	2004.03.31 ~ 2006.02.21	
⑮학 력	학 교 명	기 간	전 공 학 과	학 위	소 재 지	
	과천고등학교	1999.03.02 ~ 2002.02.25			과천시 중앙동	
	과천대학교	2002. 03. 02 ~ 현재	경영학과		과천시 중앙동	
		. . . ~ . . .				
⑯경 력	기관 또는 업체명	기 간	직 책 (직 급)	상 별 관 계 (일자)		
	해당없음	. . . ~ . . .				
		. . . ~ . . .				
		. . . ~ . . .				

[뒷 면]

가족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최종학교명	직장명 및 직위	거주지
⑰ 부모	부	홍가나	52****-*****	과천대학교	0000 0000	과천시 별양로 60
	모	박다라	54****-*****	과천대학교	주부	과천시 별양로 60
	형	홍마바	77****-*****	과천대학교	0000 0000	과천시 별양로 60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⑱ 배우자 부모			해당없음			
⑲ 복합 및 해외거주 가족 (3촌이내)			해당없음			
⑳ 친교인물	교우	김가나	82****-*****	과천대학교	학생	과천시 별양로 60
	교우	박다라	82****-*****	과천대학교	학생	과천시 별양로 60
	선배	한사아	80****-*****	과천대학교	학생	과천시 별양로 60
<p>이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원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p> <p>년 월 일</p> <p>작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p>						

- 2016. 4. 8 제정
  - 2017. 8. 25 개정
  - 2019. 8. 29 개정
  - 2019. 9. 6 개정
  - 2020. 2. 19 개정
- 과천시체육회 규약 전부개정

## 과천시체육회 과천시 종목단체 규정

### 제1장 총 칙

# 과천시체육회 과천시 종목단체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조	직
제 3 장	대 의 원 총 회	
제 4 장	이 사 회	
제 5 장	임 원	
제 6 장	과천시종목단체	
제 7 장	각 종 위 원 회	
제 8 장	재 산 및 회 계	
제 9 장	보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정은 과천시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규약 제5조 및 제33조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과천시종목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 과천시종목단체(이하 “시종목단체”라 한다)는 해당 종목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명칭을 정하여야 하며 과천시○○○○협회(회 또는 연맹)라 하고, 그 영문명칭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제2조(목적 및 지위)** ① 시종목단체는 해당 종목운동을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시민체력을 향상케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량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시종목단체는 해당 종목을 소관하는 회원종목단체 등 국제체육기구에 대하여 독점적교섭권을 갖는 해당 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과천시를 대표한다.

**제3조(소재지 등)** 시종목단체의 사무소는 과천시 관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 시종목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해당 종목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2. 해당 종목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해당 종목에 관한 각종 대회 참가
4. 해당 종목의 동호회(클럽)단체의 지도와 지원
5. 해당 종목 대회의 주최 및 주관
6. 해당 종목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7. 해당 종목의 선수 및 심판, 운영요원 등의 양성
  8. 해당 종목의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9. 해당 종목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10. 그 밖의 해당 종목 진흥 및 시종목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② 시종목단체는 해당종목의 동호회(클럽등)의 요청에 따라 소관범위 내 종목 보급 및 대회 개최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단위 이상 규모의 사업은 시종목단체가 주최 하여야 한다.
- ③ 시종목단체는 제1항 제8호의 공인과 관련하여 국제공인 규정을 벗어난 공인요건을 신설 하거나 특정업체의 제품사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되며, 공인료도 필요 이상으로 부과할수 없다.
- ④ 종목별 공인요건, 공인료, 공인기한 등 공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체육회 규정을 준용한다.
- ⑤ 시종목단체는 제4항에 따라 대한체육회가 정한 규정의 범위 내에서 종목별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공인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마다 체육회에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장 조 직

**제5조(조 직)** ① 시종목단체는 도종목단체의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 할 수 있다.

② 시종목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을 하여야 한다.

**제6조(회비의 납부)** ① 시종목단체는(정회원단체에 한한다.) 본회가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기 10일 전까지 60만원을 연회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계연도 중 신규 정회원단체 지위가 된 신규단체는 기간과 관계없이 당해연도 연회비전액을(일할불가)승인일을 기준으로 1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중 탈퇴처리, 강등처분, 관리단체로 지정된 단체의 경우에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1항의 회비납부 의무를 이행치 않은 단체의 경우 본회 규약 제7조에

따라 권리사항을 제한받을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기한 및 미납연수를 기준으로 즉시 처분한다.

1. 당해연도 4월30일까지 미납단체 : 제48조 2호 적용 (당해연도 납부시점부터 정상화)
2. 2년 미납단체 : 납부연도까지 지원중단
3. 3년 이상 미납 단체 : 강등, 관리단체 지정 절차진행 및 처분 후 2년 내 재심의 불가(재심의 후에도 미납 전액을 납부하여야 정상화)
- ④ 회비의 납부는 단체장 권위와 관계없이 단체가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 제3장 대의원 총회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시종목단체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해당종목 동호회 (클럽등 각종 단체)의 장 및 전문체육 운동부 대표
2. 시종목단체 대의원 수가 7인 미만으로 총회 구성에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팀(전문체육운동부)과 체육동호인 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시종목단체에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7명 미만으로 총회 구성이 곤란한 때에는 본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팀(전문체육 운동부를 포함한다.)과 체육동호인 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대의원을 포함한 대의원수가 7명 미만인 시종목단체는 본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대의원 구성을 할 수 있다.

⑥ 시종목단체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시종목단체의 해산 및 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종목단체 회원가입 및 제명
3. 시종목단체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8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① 시종목단체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원종목단체의 장이 소집한다.

② 시종목단체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시종목단체의 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시종목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24조 제4항 제3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③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에도 불구하고 시종목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어나 대의원, 감사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전까지 안전·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⑤ 총회는 통지된 안전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전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 ⑥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9조(의장)** ① 총회의 의장은 시종목단체의 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② 제8조 제3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의 경우에는 해당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제11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시종목단체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 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시종목단체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시종목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3조(총회의 운영)** 이 규정 외 시종목단체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약과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 제4장 이사회

**제14조(이사의 구성 및 기능)** ① 시종목단체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시종목단체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제15조(이사회 의 소집)** ① 시종목단체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시종목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제시)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 제4항 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 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퇴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시종목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7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시종목단체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종목단체의 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이사회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른다.

## 제5장 임 원

**제18조(임원)** ① 시종목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시종목단체의 장 (이하 “회장”이라 한다) 1인
2. 부회장 7인 이내
3. 이 사 15인 이상 29인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4. 감 사 2인

② 시종목단체의 임원은 해당 시종목단체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제19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시종목단체는 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체육회는 이에 따른 심사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지도자(시종목단체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동호인(시종목단체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등으로 10명 이상 150명 이내로 구성해야 하며 시종목단체 대의원 수 보다는 많게 정해야 한다.

④ 시종목단체의 제3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의 인적 구성은 대한체육회의 정관을 준용하여야 한다.

⑤ 시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시중목단체에 귀속된다.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예는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⑥ 회장 입후보를 위한 제출서류 등 시중목단체의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중목단체가 과천시체육회의 회장선거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한 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선거의 중립성)** ① 시중목단체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 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시중목단체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 예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중목단체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5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 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3. 시중목단체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시중목단체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시중목단체의 임·직원은 체육회의 회장선거, 회원중목단체, 시중목단체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체육회, 회원중목단체, 시중목단체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중목단체의 임·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

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중목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⑤ 체육회는 시중목단체의 선거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중목단체에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중목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가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22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시중목단체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 한 자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집행부 제1차 이사회 개최 전일까지로 한다.

③ 임원 구성은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2. 시중목단체 선수위원회에서 추천한 선수 출신자가 재적 임원수의 1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기존 과천시중목별연합회 중 과천시체육회가맹경기단체와 통합하지 않은 단체는 예외로 한다.
3. 여성이 재적 임원수의 20%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생활체육관계자(선수 출신은 제외한다)가 재적임원수의 3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기존 과천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중 과천시중목별연합회와 통합하지 않은 단체는 예외로 한다.

-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행정감사 1인, 회계감사 1명(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⑤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시종목단체의 임원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며, 인준 후에 임원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본회는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⑦ 체육회는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준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 ⑧ 시종목단체의 대의원은 시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23조(동일인의 겸직제한)** ① 동일인이 다른 시종목단체(체육회, 다른 회원종목단체, 시종목단체를 포함한다.)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본회 규약 제27조에 따른 단체의 장 또는 동체육회 임원이 본회의 임원으로 선임되었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 ② 동일인이 다른 시종목단체의 회장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신청전까지 현재 소속 시종목단체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 ③ 시종목단체의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시종목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장이 본회의 임원으로 선임되었을 때에는 해당 단체의 본회에 대한 대의원자격은 본회 규약 제11조 제4항에 따른다.

**제2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시종목단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종목단체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체육회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 ⑤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 ⑥ 시종목단체의 임원이 시종목단체(체육회, 다른 회원종목단체, 시종목단체를 포함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 ⑦ 시종목단체의 임원이 시종목단체(체육회, 다른 회원종목단체, 시종목단체를 포함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 ⑧ 시종목단체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 ⑨ 시종목단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시종목단체의 임원이 된 자가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시종목단체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2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중임 횟수 산정시 다른 시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종목단체의 임원은 체육회 규정 제38조에 따른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 중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회장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⑥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⑦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시종목단체의 회장으로 한정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시·군체육회, 시·군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9.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시·군체육회, 시·군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단,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으로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시·군체육회, 시·군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10.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시·군체육

회, 시·군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

11.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시·군체육회, 시·군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12. 국회의원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시종목단체의 임원이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소속되어 있는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법인 또는 기타 단체 등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시·군체육회, 시·군종목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27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 감사 또는 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시종목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이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또는 이사회 안건으로서 통지된 경우, 그 시점부터 관리단체 지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임원이 사임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 2. 제26조에 해당하는 때
- 3. 시종목단체, 과천시규모연맹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 제6장 과천시 종목단체

**제28조(지위 및 명칭)** ① 시종목단체는 도종목단체의 회원으로 과천시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진다.

② 시종목단체는 본회의 가입 및 탈퇴 규정에 의거 과천시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를 과천시체육회 소재지에 둔다.

③ 시종목단체는 종목단체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팀 및 동호인 조직을 회원으로 둘 수 있다.

**제29조(시종목단체의 총회)** ① 시종목단체의 대의원은 종목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한 해당 등록팀의 장, 동호인조직의 장으로 구성한다.

② 시종목단체는 제1항의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총회를 구성한다.

③ 시종목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7인 미만으로 제2항에 따른 총회 구성에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선수 및 동호인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시종목단체의 장이 제3항의 회의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등록선수 및 동호인의 3분의 1 이상 서면동의를 얻어 해당 본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30조(총회의 소집)** 종목단체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종목단체의 장이 소집한다.

**제31조(종목단체의 규정 등)** 종목단체의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임원의 임기와 결격사유 등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시종목단체가 별도로 정한다.

**제32조 (임원인준 등)** ① 시종목단체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도종목단체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본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도종목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인준동의 여부를 30일 이내에 해당 시·

군체육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③ 본회의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시종목단체의 임원 인준을 우선 승인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규정 승인)** ① 시종목단체는 제31조에 따라 본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시종목단체의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종목단체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시에도 이와 같다.

② 본회는 시종목단체가 규정의 제·개정에 대하여 도종목단체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승인할 수 없다.

③ 시종목단체는 해당 종목의 대회운영 규정 등 해당 종목과 관련된 전문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도종목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이의신청 및 감사)** ① 시종목단체는 도종목단체에 본회의 규정승인 및 임원 승인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도종목단체는 보고를 받은 사항 중 시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본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본회는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도종목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종목단체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④ 도종목단체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시·군종목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종목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5조(종목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요구)** ① 경기도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천시종목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본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본회는 경기도체육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승부조작 및 단체운영 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정부 및 경기도 감사결과 관리단체 지정의 처분요구가 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은 경기도체육회 규정 제9조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과 동일하며, 본회는 경기도체육회와 협의하여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제7장 각종 위원회

**제36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시종목단체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대회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종목단체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심판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경기인(경기도대회 3위 이내 입상자) 출신자가 재적위원수의 3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시종목단체의 등록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제1항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체육회의 해당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종목단체가 별도로 정한다.

⑦ 각종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7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시종목단체는 해당 종목단체등의 제규정 관리, 표창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본회와 협의하여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해당종목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시·군체육회, 시·군종목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장애인종목단체 등 체육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

2.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시·군체육회, 시·군종목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장애인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에서 임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

④ 이 규정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종목단체가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준용하여 따로 정한다.

**제3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26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종목단체에 설치하는 제36조 및 제37조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11명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로 구성하여야 한다.

##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39조(재산의 구분)** ① 종목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제40조(재 원)** 종목단체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종목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기타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제41조(회계연도)** 종목단체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2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종목단체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종목단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 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3조(회계감사 등)** ① 종목단체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② 종목단체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종목단체가 별도로 정한다.

**제43조의 2(본회의 감사, 징계 등)** ① 본회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은 시종목단체는 그 지원금을 관련 규정 및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종목 단체에 대하여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 감사할 수 있다.

③ 시종목단체가 본회의 규약, 제규정 및 총회 의결사항을 위반하거나 본회로부터 지원받은 재정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본회는 해당단체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본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경기도지사, 과천시장이 제2항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본회에 조사, 감사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⑤ 본회는 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조사,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사항을 조사, 감사가 종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2항의 요구(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본회는 제2항,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조사, 감사한 결과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본회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단체와 관계자에 대해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를 하거나 해당 단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단체는 본회의 징계요구를 따라야 한다.

⑦ 본회는 제5항에 따른 조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고, 제4항의 요구(자)기관이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단체와 관계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본회에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본회의 조사, 감사 및 징계 요구는 대한체육회 및 본회의 「감사 및 관련규정」,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제9장 보 칙

**제44조(해 산)** ① 종목단체는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로 해산 한다.

② 종목단체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승인을 얻어 종목단체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제45조 (규정변경)** ① 종목단체의 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정회원단체) 및 준회원단체에 한함) 본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인정단체는 보고하여야 한다.

② 종목단체의 규정은 본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③ 본회가 종목단체의 규정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종목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6조(규정 제·개정 등)** ① 종목단체는 이 규정에 따라 규정을 제·개정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해당 시종목단체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종목단체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③ 시종목단체의 규정(사무국 관련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47조 (규정의 해석)** ① 이 규정은 시종목단체의 규정에 우선하며, 시종목단체 규정을 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종목단체의 규정과 이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시종목단체가 본회의 규약, 이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본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48조(제한사항)** 종목단체가 본회의 규약 및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본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회는 규약 제7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정회원단체의 경우, 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본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즉시 처분하고 차기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1. 총회에 3회 이상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했을 경우 대의원자격 제한 (1년)
2. 4월 30일까지 회비를 미납했을 때 지원중단

**제49조(경영공시)** ① 종목단체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종목단체의 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전 (구)과천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과천시생활체육회의 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경우 이 규정에 따라 통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구)과천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과천시생활체육회의 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단체가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종목단체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③ 통합 선임된 임원의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를 2020년12월까지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018년 12월까지로 한다.

④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구)과천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과천시생활체육회의 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단체의 임원(회장을 제외한다)의 정수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의 회장이 취임한 후 다음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정수를 초과 할 수 있다.

⑤ 종목단체의 회장선거 시점, 임원의 임기, 임원의 수 및 임원의 중임 횟수에 관해서는 부칙 제2조 제3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 2016. 4. 8 제정
- 과천시체육회 규약 전부개정 ● 2019. 8. 29 개정
- 2020. 2. 19 개정

## 과천시체육회

### 입회 및 탈퇴에 관한 규정

제 1 조	목	적
제 2 조	정	의
제 3 조	가 입 신 청 서 류	
제 4 조	정 회 원 단 체 의	
	가 입 요 건	
제 5 조	준 회 원 단 체 의	
	가 입 요 건	
제 6 조	인 정 단 체 및	
	가 입 요 건	
제 7 조	심 의 절 차	
제 8 조	탈 퇴 및 제 명	
제 9 조	탈 퇴 신 청	

## 과천시체육회

### 입회 및 탈퇴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천시 체육에 관한 규약 제5조 제1항 및 제10조에 따른 과천시 종목단체의 과천시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가입 및 탈퇴의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입”은 본회 규약 제7조에서 정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에 동의하여 본회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2. “탈퇴”는 본회가 회원으로 가입을 승인한 과천시 종목단체 규정에서 정한 회원관계에서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가입신청서류)** 본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과천시종목단체는 이를 상정할 본회 정기 대의원총회 3개월 이전(매 회계연도 1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입신청서 (본회 양식)
2. 단체 연혁
3. 임원 명단 (취임승낙서, 이력서 및 신원증명서 첨부)
4. 단체의 규정
5. 종목개요 및 종목관련 제 규칙
6. 회원종목단체 및 시·군 종목단체 현황
7. 선수, 팀, 동호인조직 및 스포츠클럽 등 등록현황
8.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9. 수지결산서 및 수지예산서
10. 가입을 결의한 대의원총회 회의록

**제4조(정회원단체의 가입요건)** ① 본회에 정회원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과천시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경기도 및 과천시를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

2. 종목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3. 과천시를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단체일 것
4. 10개 이상의 동호회, 전문체육 운동부, 클럽 등 단체가 조직되어 있을 것. 다만, 전문체육 운동부는 중앙경기단체, 학교 등의 승인을 받은 운동부를 말하며, 정회원단체 이하 가입요건의 운동부의 정의도 같다.
5. 과천시종목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 2회 이상일 것
6.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7. 본회의 규정 및 ‘과천시종목단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목단체의 규정이 제정되어 있을 것
8. 대한체육회, 경기도체육회에 결성되었거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종목일 것

②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본회가 정회원단체로 가입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

**제5조(준회원단체의 가입요건)** ① 본회에 준회원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과천시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경기도 및 과천시를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
2. 종목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3. 과천시를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단체일 것
4. 5개 이상의 동호회, 클럽 등 단체가 조직되어 있을 것
5. 과천시종목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 1회 이상일 것
6.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7. 본회의 규정 및 ‘과천시종목단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목단체의 규정이 제정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본회가 준회원단체로 가입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

**제6조(인정단체의 가입요건)** ① 본회에 인정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과천시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전국 및 과천시를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

2. 종목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3. 과천시를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단체일 것
  4. 3개 이상의 동호회, 클럽, 전문체육 운동부 등 단체가 조직되어 있을 것
  5.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6. 본회의 규정 및 ‘과천시종목단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목단체의 규정이 제정되어 있을 것
- ②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본회가 인정단체로 가입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절차)** ①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심의절차는 본회 규약 제10조에 따른다.

- ② 본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단체는 인정단체로 가입하여야 한다.
- ③ 준회원단체는 준회원단체 승인일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하여야 정회원단체 승격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본회는 승인조건 이행여부를 반드시 심사해야 한다. 인정단체의 준회원단체 승격 심의요청 또한 같다.

**제8조(탈퇴요청 및 제명)**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천시종목단체에 대하여는 탈퇴하게 한다.

1. 과천시종목단체가 규약 제10조 제2항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한 경우
  2. 회원의 가입요건을 상실하여 과천시종목단체로서의 존속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곤란한 경우
  3. 과천시종목단체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본회 규정, 지시사항을 위배하여 과천시종목단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임원간의 분쟁, 재정악화, 집행부 부재 등의 사유로 과천시종목단체로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본회 위상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체육발전을 저해하는 과천시종목단체인 경우
- ② 과천시종목단체가 해산한 경우 본회의 회원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9조(탈퇴신청)** 과천시종목단체가 본회 규약 제10조 제2항에 의해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탈퇴원서
2. 탈퇴이유서
3. 탈퇴를 결의한 대의원총회 회의록

● 2019. 2. 26 제정  
 과천시체육회 규약 전부개정 ● 2019. 8. 29 개정  
 ● 2020. 2. 19 개정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구)과천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및 (구)과천시생활체육회 과천시종목별연합회의 종목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회원 단체로 한다. 다만, (구)과천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와 (구)과천시생활체육회 과천시종목별연합회의 종목이 통합대상인 경우 해당 종목단체가 통합하였을 때 회원종목단체가 되며, 통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 단체가 된다.

② (구)과천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및 (구)과천시생활체육회 과천시종목별연합회 중 과천시체육회 과천시종목단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강등되는 경우에는 (구)정가맹경기단체와 (구)정회원단체는 준회원단체가 되며, (구)준가맹경기단체와 (구)준회원단체는 인정단체가 된다.

③ (구)과천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구)과천시생활체육회 과천시종목별연합회의 준가맹단체, 준회원단체는 종목이 통합대상인 경우 해당 종목단체가 통합하였을 때 준회원종목단체가 되며, 통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단체가 된다.

**제3조(유효기간)** 부칙 제2조에 따른 과천시종목단체의 등급은 이 규정이 시행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본회는 2년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 규정에 따라 과천시종목단체의 등급 심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등급 심의가 있기까지는 부칙 제2조에 따른 과천시종목단체의 등급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 과천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위 원 회 의 구 성 및 회 의	
제 3 장	법 제 및 표 창	
제 4 장	임 원 의 연 임 횟 수 제 한 예 회 인 정 심 의	
제 5 장	징 계	
제 6 장	보 칙	

과천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설치근거)** 과천시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는 규약 제38조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적용)** ① 이 규정은 본회, 과천시 종목단체, 각 동지회 (이하“동체육회”라 한다.), 과천시 종목단체 클럽 및 운동부의 임직원과 그 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심판에게 적용한다.

② 본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이 규정에 따른다. 다만, 명확한 규정이 없을 시는 상급단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본회 규약 제38조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본회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제규정의 관리 및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3. 체육계 표창에 관한 사항
4. 체육상 추천에 관한 사항
5. 정부 및 경기도, 과천시, 기타 유관기관에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6. 본회, 과천시종목단체, 동체육회, 과천시 종목단체 클럽 및 운동부의 임직원과 그 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심판의 징계에 관한 사항
7. 과천시 종목단체와 동체육회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 인정 심의 및 과천시 종목단체클럽 임원에 대한 임원 심의의 제심
8. 본회와 본회 관계단체(그 구성원을 포함한다)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경기, 제도, 단체운영등)의 조정, 중재
9.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 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1명
  3. 위원 5명 이상 9명 이하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회장이 본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스포츠 또는 법률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④ 본회 규약 제30조, 제38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⑤ 위원회의 위원으로 여성이 재적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6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본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회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8조(회의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정계에 대한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외의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차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제척 및 회피)**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정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정계 혐의자가 친족(「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그 정계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정계혐의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정계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제3장 법제 및 표창

**제12조(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법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본회의 제규약,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본회의 제규정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유권해석
3. 기타 법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제1호의 제규약은 본회 규약 제12조, 제규정은 동 규약 제18조 제2항에 따라 총회와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각각 제·개정한다.

**제13조(표창대상)** 표창은 국제 및 전국대회 우수성적 달성, 체육 보급·육성 등 체육발전에 공헌한 단체(기관) 및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14조(종 류)** ① 표창의 종류는 정부, 대한체육회 및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체육회, 과천시, 과천시의회 등 포상과 본회 자체표창으로 구분한다.

- ② 정부포상은 「상훈법」 및 「정부표창 규정」에 따라 추천한다.
- ③ 대한체육회,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체육회, 과천시, 과천시의회 등의 포상은 해당 기관의 지침을 따른다.

**제15조(자체표창의 구분)** ① 본회 자체 표창은 정기 표창과 임시 표창으로 나눈다.

- ② 본회 정기표창에는 과천시체육상(과천시장 훈격) 표창이 있다.
- ③ 체육상 표창은 매년 과천시체육상 시상식 개최 일에 실시하며 표창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체육 진흥
2. 생활체육 진흥
3. 학교체육 진흥
- ④ 국내 체육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국내외 각종 대회 등에서 국위를 선양한 사람에게 임시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⑤ 자체 표창 지급 세부 기준 및 수여 계획은 별도로 정한다.

**제16조 (절 차)** ① 정부 및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체육회,

과천시, 과천시의회, 과천시체육회 등 포상은 과천시 종목단체의 장 및 본회의 장이 추천한 단체 및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여 추천한다. 다만, 정부, 대한체육회 및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체육회, 과천시, 과천시의회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회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직접 추천할 수 있다.

② 과천시체육상은 과천시 종목단체의 장, 동체육회장, 관내 운동부 및 선수 관련 학교장, 본회가 지정한 체육유관단체에서 추천한 단체 및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체육상 수상 대상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전자문서로 된 공적조서를 포함한다) 2부 및 공적을 증명하는 자료 1부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경기실적 평가가 반영되는 부분의 경우는 소속 장의 실적제출 공식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본회는 체육회 자체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수여하려는 표창의 종류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4장 임원의 연임 횟수제한 예외인정 심의

**제17조(심의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임원의 중임횟수 제한의 예외 인정을 심의·의결한다.

1. 시종목단체 임원 및 회장 후보자
2. 동지회(동체육회) 임원 및 회장 후보자
3. 시종목단체, 동지회의 소속단체 임원에 대한 심의의 재심

**제18조(심의절차)** ①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국제스포츠기구, 중앙 및 도단위 스포츠단체(정회원) 임원진출 시 임원경력이 필요한 경우

2. 재정기여, 주요 국제·내 대회 성적, 단체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

② 임원으로 선임하기 전에 위원회의 예외적용 여부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회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기간 전에 심의 또는 재심의를 상급단체 관련 규정에 준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시종목단체 및 동체육회를 거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심의 신청서 (내규에 따름)
2. 이력서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제출하기로 결정한 서류
-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후보자가 시종목단체 및 동체육회를 거쳐 심의를 요청한 경우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제1항의 예외적용 여부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19조(심의결과)** ① 위원회는 객관적인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한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기준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한다.

**제20조(재심요구)** ① 제19조의 의결에 따라 연임이 제한된 임원 후보자가 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 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작성하여 시종목단체 또는 동체육회를 거쳐 본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심신청서(내규에 따름)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종목단체 또는 동체육회를 거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심신청서가 본회에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21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 제5장 징 계

**제22조(위원회의 설치의무)** 시종목단체 및 동체육회는 본회 규약 제38조 및 과천시 종목단체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3조(증거우선의 원칙)** 위원회 제22조에 따른 과천시 종목단체별 또는 동체육회별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종목위원회 또는 동위원회”라 한다)는 징계를 할 경우, 징계혐의자에 대해 그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징계하여야 한다.

**제24조(우선 징계처분)** 위원회(종목위원회, 동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계된 형사사건 이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하여도 제31조 제2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제25조(징계대상)**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조사하여 징계 심사 할 수 있다.

1.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권 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2. 체육 관련 입시비리
3. 폭력 · 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
5.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6. 부정 참가, 대회진행 방해, 집단불참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건

② 상급단체(경기도체육회)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본회 임·직원, 시종목단체 임·직원, 동체육회 임·직원에게 대한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징계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본회, 시종목단체, 동체육회의 직원이 징계혐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 또는 해당 단체의 인사위원회(본회에

서 승인된 구성 및 규정 적용 운영)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한다.

④ 징계혐의자가 사임(사직), 임기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본회, 시종목단체, 동체육회 등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26조(징계기관의 분류 등)** ① 본회는 종목위원회와 동위원회가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 다만, 시종목단체 및 동체육회가 결정한 징계사항은 본회가 이의신청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② 징계사건에 대한 관할이 불분명한 경우 위원회에서 종목위원회 또는 동위원회 중에서 징계 관할을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제27조(징계종류)** ① 선수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제명
2. 경징계 : 견책

② 지도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2. 경징계 : 견책, 감봉

③ 심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강등, 해임, 제명
2. 경징계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심판에 한정한다)

④ 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자격정지, 해임, 제명
2. 경징계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임원에 한정한다)

⑤ 단체 직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정직, 강등, 해임, 파면
2. 경징계 : 견책, 감봉

⑥ 운동부에 대해서는 출전정지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각 호의 징계를 받은 선수, 지도자, 심판, 단



체 임원은 징계만료 시까지 선수, 지도자, 심판, 단체 임원과 관련된 모든 활동이 제한된다.

**제28조(징계요구)** ① 본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징계대상과 징계수위를 정하여 해당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상이 제25조 제2항의 사람인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징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종목위원회, 동위원회에서 징계를 하여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즉시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요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처리 결과를 본회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징계할 수 있다.

**제29조(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도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단체의 장은 징계혐의자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 권익 침해(폭력·성폭력) 등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요구(서면, 전화, 메일 등)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를 받은 소속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출석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하여 징계의결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⑦ 징계혐의자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30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 요구자 및 신청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1조(징계의 정도 결정)**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공적(功績), 적극행정, 우수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종목위원회, 동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2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1에 따라 징계한다.

③ 위원회(종목위원회, 동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25조 제1항 제6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징계한다.

**제32조(징계의 감경)** ① 위원회는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의장, 과천시장, 과천시의회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경기도체육회 회장 이상의 표창 받은 공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金品授受) 비위 및 횡령·배임

2. 체육관련 입시 비리

3. 폭력·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

③ 제2항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감경, 사면, 복권할 수 없다.

④ 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시종목단체, 동체육회에서 감경, 사면, 해제, 복권할 수 없다.

⑤ 사면이라 함은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계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복권은 징계로 인한 자격정지 등에 대하여 예전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3조(징계의 의결 및 통보)** ①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면, 본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계결정서에는 징계사유와 징계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서를 통보하는 경우, 이의신청 기한과 방법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이의신청 등)** ① 징계혐의자는 종목위원회 또는 동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을 명시하여 본회의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종목위원회 또는 동위원회가 심사하여 의결한 징계에 대해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본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경우, 종목위원회 또는 동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를 존중하되부당·위법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제35조(대회 중 경기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절차)** ① 제2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행위가 발생한 경우, 징계혐의자는 행위발생 직후부터 종목위원회, 동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할 때까지 해당대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단체는 행위발생 직후 즉시 종목위원회, 동위원회 또는 위원회 개최를 징계 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당단체는 제2항에 따른 통보 후 48시간 이내에 종목위원회 또는 동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 후 5일 이내에 징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종목위원회, 동위원회 또는 위원회는 징계혐의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종목위원회, 동위원회 또는 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해당 단체는 이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3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제34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의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36조(징계의 효력 등)** ① 시종목위원회 또는 동체육회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징계혐의자가 제34조 제2항 또는 제35조 제6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35조 제5항에 따른 징계 결정은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② 해당단체는 제1항의 징계에 대하여 이를 즉시 문서로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징계의결 고의 지연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 및 재심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결정이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본회에 이의를 신청한 경우 본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최종결정시까지 그 징계효력 발생은 일시 정지한다.

**제37조(징계부가금)** ① 위원회(시종목위원회, 동체육회 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33조에 따라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의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 등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 해당 단체의 장은 별표 3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 부가금감면 의결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단체는 별지 제4호 서식 징계부가금 감면결정서를 그 즉시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부터 60일 내에 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신청한 경우

2. 위원회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을 안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⑥ 징계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3항 또는 제5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형의 종류,형량 및 실행,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제38조(징계의 보고)** 제22조에 따른 종목위원회 또는 동위원회가 심사하여 징계한 사항은 징계결정이 완료된 즉시 이를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선수권의 침해 사안에 관한 특별규정)** ① 위원회에 신고 접수된 선수 권익침해(폭력·성폭력 등)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는 1차 조사·구제기관인 종목위원회 또는 동위원회에 이를 즉시 이송하여 처리케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 권익 침해가 중대하거나 긴급하게 조사·구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가 직접 조사·구제할 수 있다.

③ 선수 권익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기관은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1. 시종목위원회는 과천시대표 및 후보선수 등이 해당 단체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대회를 대비한 훈련 또는 대회 중 발생한 사안을 조사·구제한다.

2. 동체육회위원회는 해당 체육회가 관장하고 있는 대회참가, 소속 선수의 훈련 또는 대회 중 발생한 사안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안을 제외한 사안을 조사·구제한다.

④ 본회에 신고·접수된 선수 권익 침해 사안을 1차 조사·구제기관에 이송할 경우 이송 내용을 진정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종목단체와 동체육회는 본회에서 이송 받은 사안, 직접 신고 접수된 사안,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기로 결정한 사안 등 소관 권익 침해 사안에 대하여 해당선수 및 지도자가 소속된 운동경기부의 소관 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선수 격리 보호 등의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신고 접수된 선수 권익 침해에 대하여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 조사 및 직접소환조사 또는 위원회의 현지 실지 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징계일 현재 선수·지도자등록이 되지 않았으나 별표 1의 제2항(개별 기준)의 ‘마’, ‘바’, ‘사’호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선수·지도자 등록 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징계의 효력은 위원회가 그 징계를 의결한 날부터 발생한다.

⑨ 위원회는 징계 확정 내용을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장에게 통지함은 물론 본회와 징계 대상자 소속 종목단체 또는 동체육회,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⑩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징계혐의자 또는 피해자는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징계처분에 대해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스포츠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른 규정이나 관례에도 불구하고 재심기간에도 징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제40조(행정처리)** 본회 및 시종목단체, 동체육회는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결정사항을 체육정보 시스템(임원, 지도자, 선수, 체육동호인, 심판)에 반드시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1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 업무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2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징계 등에 관한 회의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장 보 칙

**제43조(규정 제·개정)** ① 시종목단체 및 동체육회는 이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의 위원회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이 규정은 시종목단체 및 동체육회의 규정에 우선하며, 해당 단체가 규정을 이 규정에 맞게 제·개정하지 아니하여 해당 규정과 이 규정이 상이할 때에는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 부 칙 <제 정 2019. 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원의 임기 횟수 제한의 산정은 이 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행 전 임기 회수를 포함하여 산정하고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상급 단체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시행일 당시 본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종목위원회 및 동위원회에 접수되거나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신청 되었으나 최종 의결이 되지 않은 사안에 적용된다.

<별표1>

위반행위별 징계 기준 (제28조 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 따른다.

나. 징계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1) “경미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피해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극히 경미한 경우를 말한다.
  - 2) “중대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중과실인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중대한 경우를 말한다.
- 단.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가.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배임	선수/지도자 심 판/임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미한 경우 :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자격정지 1년 이상 3년 미만</li> <li>중대한 경우 : 자격정지 3년 이상 또는 제명</li> </ul>
	직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미한 경우 : 정직 6개월 이상 1년 미만 또는 강등</li> <li>중대한 경우 : 해임 또는 파면</li> </ul>
나. 단체/대회 운영과 관련된 직권남용, 직무태만, 보조금 관련법 위반, 분회 지시사항 불이행 등 비위의 사건	선수/지도자 심 판/임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미한 경우 : 견책, 출전정지 또는 자격정지 1년 미만</li> <li>중대한 경우 : 출전정지·자격정지 1년 이상 또는 해임·제명</li> </ul>
	직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미한 경우 : 견책 또는 감봉</li> <li>중대한 경우 : 정직, 해임, 파면</li> </ul>
	단 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미한 경우 : 해당대회 보조금 지원중단 (1회)</li> <li>중대한 경우 : 보조금지원 중단(1년 이상), 대회참가 제한, 관리단체 지경 권고 등</li> </ul>
다. 승부조작, 편파판정	선수/지도자 심 판/임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격정지 3년 이상 또는 영구제명·해임</li> </ul>
	직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직 6개월 이상 또는 해임, 파면</li> </ul>
라. 체육 관련 입학 비리	선수/지도자 심 판/임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구제명</li> </ul>
	직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임 또는 파면</li> </ul>
마. 폭 력	선수/지도자 심 판/임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미한 경우 : 출전정지 또는 자격정지 1년 이상 3년 미만</li> <li>중대한 경우 : 3년 이상의 출전정지·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li> </ul>
	직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미한 경우 : 견책 또는 감봉</li> <li>중대한 경우 : 정직, 해임, 파면</li> </ul>

위반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바.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	선수/지도자 심 판/임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구제명</li> </ul>
	직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임 또는 파면</li> </ul>
사. 성추행, 성희롱 등 행위	선수/지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범죄행위가 인정되거나 극히 경미한 경우: 1년 미만의 자격정지</li> <li>경미한 경우 : 1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li> <li>중대한 경우 : 5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li> </ul>
	심 판/임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미한 경우 :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li> <li>중대한 경우 :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li> </ul>
	직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미한 경우 : 감봉 6개월 이상 또는 정직 6개월 이상</li> <li>중대한 경우 : 해임 또는 파면</li> </ul>
아.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선수/지도자/ 심 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미한 경우 : 자격정지 1년 이상 3년 미만</li> <li>중대한 경우 : 자격정지 3년 이상 또는 제명·해임</li> </ul>
	임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미한 경우 : 출전정지 또는 자격정지 1년 이상 3년 미만</li> <li>중대한 경우 : 자격정지 3년 이상 또는 해임·제명</li> </ul>
	직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미한 경우 : 정직 6개월 이상 1년 미만 또는 강등</li> <li>중대한 경우 : 해임 또는 파면</li> </ul>
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	선수/지도자 심 판/임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미한 경우 : 견책, 출전정지·자격정지 1년 미만</li> <li>중대한 경우 : 출전정지·자격정지 1년 이상, 해임 또는 제명</li> </ul>
	직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미한 경우 : 견책 또는 감봉</li> <li>중대한 경우 : 정직, 해임 또는 파면</li> </ul>

주1) 입학비리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① 입학관련 기록 내지 기재사항을 고의로 조작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는 행위와 이와 관련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② 입학과 관련하여 해당학생선수·학부모·소속 학교·지도자에게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약속 또는 제공하는 행위와 이를 교사·방조하거나 도움을 주는 등의 행위
- ③ 기타 학생선수 선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치는 행위

대회중 경기장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  
(제28조 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2. 개별기준

징계 대상	위반행위	징계기준
1. 심판 및 임원 (주최자)	가. 심판 배치상 불공정 행위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과실 및 경기진행 미숙	자격정지 1년 이하
2. 선 수	가. 심판 판정 불복 폭언	출전정지 6개월 이상
	나. 심판에 대한 폭행	출전정지 2년 이상
	다. 부정선수 출전	출전정지 1년 이상
	라. 선수 상호간 폭행	
	○ 주동자	출전정지 1년 이상
	○ 가담자	출전정지 6개월 이하
3. 지도자	마. 소속팀, 단체 집단불참 행위 주동/가담	출전정지 1년 이하
	가. 심판 판정 불복(경기지연) 폭언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자격정지 5년 이상
	다. 부정선수를 출전시킨 자	자격정지 3년 이상
	라. 선수지도 감독 소홀에 의한 물의를 야기한 자(교사)	자격정지 1년 이상
	마. 물의 야기를 방조한 자	자격정지 6개월 이하
	바.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 주동자	출전정지 1년 이상
○ 가담자	출전정지 6개월 이하	
4. 기타 임원 (참가자)	가. 심판 판정 불복(경기지연) 폭언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자격정지 5년 이상
	다. 물의 야기를 방조한 자	자격정지 6개월 이하
	라.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5. 단체(팀), 클럽 등	○ 주동자	무기한 자격정지
	○ 가담자	자격정지 5년 이상
	가. 심판 불복 경기방해	출전정지 6개월 이하
	나. 경기장 폭행 난동	출전정지 3년 이상
다. 선수 집단불참 주동, 가담, 방조 등	출전정지 1년 이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제34조 제2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금품 및 향응 수수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4~5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3~4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2~3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1~2배
2. 공금 횡령·유용	공금 횡령·유용액의 3~5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2~3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2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2배
※ 비 고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징계 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물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변상금·물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 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행,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공적조서

① 성명	(한자원명)																					
②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③ 군번(군인의 경우)								
④ 본적(국적)																						
⑤ 주소																						
⑥ 직업							⑦ 소속															
⑧ 직위						⑨ 등급(직급·계급)						⑩ 근무 기간										
⑪ 공적요지(50자 내외)						⑫ 공적 분야																
⑬ 추천 훈종						⑭ 추천 순위																
조 사 자																						
⑮ 소속							⑯ 직위															
⑰ 직급							⑱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주요 학력 및 경력			
⑲ 년월일	⑳ 이력	㉑ 년월일	㉒ 이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㉓ 년월일	㉔ 내용	㉕ 년월일	㉖ 내용
㉗) 공적사항			

공    적    사    항





징계부가금감면결정서

인사 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주소			
의결 주문				
이유				
년 월 일 과천시체육회 스포츠평정위원회 위원장 <span style="float: right;">①</span>				

## 과천시체육회 이사회 및 임원 운영 규정

제 1 조	목	적
제 2 조	회 비 납 부	
제 3 조	해 임 및 사 임	
	탈 퇴 규 정	
제 4 조	제 한 규 정	

※ 의결주문 : 징계부가금은 0배(0원)에서 0배(0원)로 감면한다는 형식으로 기재

## 과천시체육회 이사회 및 임원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천시체육회 이사회와 임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비납부)** ① 본회 임원은 해당 직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연회비를 당해년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10일전까지 본회 지정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년도 4월30일까지 완납하지 않은 임원에 대하여는 임원의 권한을 제한하며 또한,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자동탈퇴 처리한다.

1. 수석부회장 700만원
2. 부회장 200만원
3. 감사 및 이사 60만원(회장, 당연직 임원 및 본회 규약 제27조 제7항에 따른 감사<정회원단체장 대표> 제외)

② 임원회비(이사회비)는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해 총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③ 본회 이사가 회비 납부 후 절차를 통해 새로운 직위(수석부회장, 부회장)로 선임될 경우에는 해당 선임 익일부터 당해년도 남은 일수를 산정하여 1개월 이내로 추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할 수 없으며, 신입이사는 연중 가입시기와 관계없이 기존 이사와 같은 이사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당해년도 회비 미납 후 사퇴 및 탈퇴한 이사는 3년간 본회 임원은 물론, 종목단체(인정단체, 준회원단체, 정회원단체, 동지회) 임원으로 활동할 수 없으며, 또한 기한 경과 후 본회 재가입 및 종목단체 임원 활동 시에는 미납회비까지 납부하여야지만 선임 및 활동이 가능하다.

⑤ 과천시체육회 규약(이하 “본회 규약”이라 한다) 제27조 제10항에 따라 대의원자격을 가진 자가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해당단체 회비와 무관하게 해당 직위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해임 및 사임, 탈퇴규정)** 본회 규약 제30조, 제31조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은 탈퇴(해임)하게 한다.

1. 이사회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무단 불참 하였을 경우
2. 회비를 당해년도 4월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3. 체육회 및 이사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 하였을 경우
4. 체육회의 규약 및 규정을 위배 하였을 경우
5. 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4조(제한규정)** ① 본회 임원은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 본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임원의 권한을 제한한다.

② 본회 임원은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공식으로 위임받은 업무 이외에 사무국 등 체육회 업무분야에 부패방지법에 반하는 부당한 압력, 알선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임원의 권한을 제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과천시 체육회 회장선거 관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선거인명부의 작성	
제 3 장	후보자 자격 및 등록	
제 4 장	선거운동과 금지행위	
제 5 장	투 표 및 개 표	
제 6 장	당 선 인 결 정	
제 7 장	보	칙

# 과천시체육회 회장선거 관리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천시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규약 제24조에 따라 본회의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이하 “회장선거”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장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본회 규약(이하 “기본규정”이라 한다)에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2020년 1월 15일의 전 55일(2019년 11월 21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한다.

1. 제4조에 따른 선거일 결정
  2. 제8조에 따른 선거인수의 결정 및 배정
  3. 제10조에 따른 선거인 후보자 명부의 작성
  4. 제11조에 따른 선거인명부의 작성
  5. 제12조 및 13조에 따른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6. 제16조 내지 제18조에 따른 후보자의 등록, 사퇴 및 후보자 공고에 관한 사항
  7. 제19조 내지 제32조에 따른 선거운동 관리에 관한 사항
  8. 제48조 내지 선거와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 및 조사, 결정에 관한 사항
  9. 제33조 내지 제47조, 제49조, 제50조에 따른 투표, 개표 및 당선인 등 결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제1호부터 제10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하며, 본회에 비당원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본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이 때 “본회와 관계”된 사람은 대한체육회(회원종목단체 포함),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시·군·구 종목단체 포함) 및 시·군·구체육회(읍·면·동체육회 포함)의 임직원, 각종 위원회 위원을 말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단,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기본규정 제26조에 따라 회장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위원을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회장 후보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의 친족을 말한다)인 것으로 밝혀질 경우, 해당 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또한, 선거권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⑦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사임 또는 결격사유 등으로 7명 미만이 될 경우에는 즉시 제5항의 방식으로 위원을 보선하여야 한다.

⑧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의2(공정선거지원단)**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예방 및 감시·단속 활동을 위하여 선거인명부 확정일부부터 선거일까지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으로 구성된 공정선거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사전안내·예방 및 감시·단속·조사활동을 한다.

③ 공정선거지원단원의 수는 20명 이내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원에게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공정선거지원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⑥ 공정선거지원단원이 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신분증명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⑦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3. 임무수행 중 입수한 자료를 유출하거나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경우
  4. 공정선거지원단원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건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⑧ 공정선거지원단원이 사직하거나 해촉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분증명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 ⑨ 공정선거지원단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여비는 본회의 여비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제4조(선거일 등)** ① 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후 5일 이내에 선거일을 확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본회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본회가 그 판결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2. 본회 회장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 ③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하며, 그 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되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 제2장 선거인명부의 작성

**제5조(선거권자)**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은 선거권을 가진다.

1. 만 19세 이상
  2. 2020년 1월 15일의 전 60일(2019년 11월 16일)까지의 기본규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대의원, 종목단체(정회원) 및 동체육회의 대의원
-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종목단체(정회원)는 제1항 제2호의 선거권자가 될 수 없다.
- ③ 제1항의 사람이 본회의 임원인 경우라도 선거권자가 된다.
- ④ 회장이 사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여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할 경우에는 회장이 선거권자가 되며,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본회의 인준을 받은 직무대행이 선거권자가 된다.

**제6조(선거인)** ① 제5조 규정의 선거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선거인으로 등재되며, 기본규정 제24조 제3항에 따른 대의원확대기구를 구성한다.

1. 기본규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
  2. 종목단체(정회원) 대의원 중 추천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3. 동체육회 대의원 중 추천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 ② 대의원이 후보자로 등록한 때에는 선거인이 될 수 없다.

**제7조(선거인 후보자 추천의 요청)**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35일까지 종목단체(정회원) 및 동체육회에 제6조에 따른 각 단체별 대의원확대기구 구성(안)을 통보하고, 선거일 전 25일까지 제5조의 대의원 명단과 각 대의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선거인수의 결정 및 배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인구수 기준에 따라 선거인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인구 5만명 미만인 시·군·구 : 선거인수 최소 50명 이상
  2. 인구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인 시·군·구 : 선거인수 최소 100명 이상
  3. 인구 1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인 시·군·구 : 선거인수 최소 150명 이상
  4. 인구 30만명 이상 200만명 미만인 시·군·구 : 선거인수 최소 200명 이상
- ② 제1항에 의한 선거인수를 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본규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은 선거인이 된다.
  2.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종목단체(정회원) 및 동체육회에 1명 이상의 선거인수를 배정한다.

③ 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선거인수 결정 및 배정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기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1. 전체 대의원 수가 선거인 구성기준 수보다 적을 경우
2. 제5조에 따른 선거권자 전체를 선거인으로 하는 경우

④ 제1항의 인구수는 2020년 1월 15일의 전 60일을 기준으로 통계청 및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활용한다.

**제9조(선거인 후보자의 추천)** 종목단체(정회원) 및 동체육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각 단체별로 선거일 전 25일까지 제5조의 대의원 명단과 각 대의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공문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선거인 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종목단체(정회원) 및 동체육회로부터 추천받은 선거인 후보자에 대하여 중복여부 및 제5조에 따른 선거인 자격 유무를 확인하여 선거인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후보자가 두 개 이상의 단체에 의하여 추천된 경우 해당 선거인 후보자의 의사에 따라 어떤 단체의 추천에 의한 선거인 후보자가 되는지를 결정하며, 동일인을 추천한 다른 단체에는 재추천을 요청하지 않는다.

③ 선거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거인 후보자로 추천된 경우에는 재추천 요청 없이 배제하여야 한다.

**제11조(선거인명부의 작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5일부터 3일 이내에 추천 받은 선거인 후보자 중에서 제8조에 따라 종목단체(정회원) 및 동체육회에 배정되었던 선거인수를 기준으로 무작위 추첨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선거인명부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종료일 다음날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확정된 선거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선거인명부의 열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에 열람기간을 정하여 선거인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의 열람 기간은 3일로 한다.

③ 후보자는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확정 즉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선거인명부 이의신청)** ①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되었다고 인정되면,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이의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장 후보자 자격 및 등록

**제14조(후보자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장선거 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부터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 중에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6.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7. 국회의원

② 대한체육회(회원종목단체 포함),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시·군·구 종목단체 포함) 및 시·군·구체육회(읍·면·동체육회 포함)의 회장과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2020년 1월 15일의 전 60일(2019년 11월 1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회장과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때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③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사직기한일의 오후 6시까지 본회 및 소속단체의 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등록신청 시에 2천만원의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탁금의 납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금의 예치를 위하여 개설한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의 예금계좌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의 명의로 입금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입금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후보자 등록)** 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2일부터 2일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 서식'의 후보자 등록신청서
2.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 가. 가족관계증명서(생년월일 포함)
  - 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 다. 후보자가 소속한 경력이 있는 체육단체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발행한 후보자의 징계사실 유무에 관한 확인서

3.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임원결격사유의 부존재 확인을 위한 본인 서약서

4. 제15조에 따른 기탁금 또는 기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사직 또는 퇴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6.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7. 기타 관리상 필요한 서류로써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고 이를 수리하여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부('별지 제7호 서식')에 등재 후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자에게 접수증('별지 제8호 서식')을 교부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4조제1항의 후보자 자격에 관한 사항을 선거일 전 35일까지 본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후보자 등록 서류를 고의로 조작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작성 제출한 것이 발견된 때

⑥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7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후보자 사퇴)** 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사퇴신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가 사퇴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다시 당해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 제4장 선거운동과 금지 행위

**제19조(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제20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정한다. 다만, 제26조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 후보자가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2조(어깨띠·윗옷)**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나 윗옷(上衣)을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23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2. 문자(사진·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다)를 전송하는 방법

**제24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
2.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 시스템을 말한다)을 전송하는 방법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규정에 위반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된 때에는 그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호(정의)

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가 삭제된 경우 해당 정보를 게시한 사람은 그 정보가 삭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본회 전자문서[공문] 형식)으로 한다.

1. 법에 위반되는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의 주소
2.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내용
3. 요청근거 및 요청내용
4. 요청사항의 이행기간
5. 불응 시 조치사항

⑤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이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었거나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이의신청인에게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제3항의 이의신청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⑦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2항의 요청을 철회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그 뜻을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경기 및 훈련시간 제외)에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26조(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선거일에 투표를 개시하기 전에 선거 개최 장소(이하 이 조에서 ‘투표소’라 한다)에서 선거인에게 기호 순에 따라 각 후보자를 소개하고 후보자로 하여금 지역체육 육성·발전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의 범위에서 동일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가 자신의 소견발표 순서가 될 때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견발표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후보자가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들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는 때에는 이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고 후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견발표를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투표소에서 후보자가 소견을 발표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소견발표 개시시간·장소 및 발표시간을 정한 후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일이나 투표소가 변경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소견발표 일시 또는 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고 후보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후보자 소견발표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⑦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후보자를 소개할 사람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공정한 사람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후보자를 소개할 때에는 해당 후보자의 소견발표 순서에 그 기호, 성명 및 경력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경력은 해당 후

보자의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경력에 따른다.

⑧ 후보자가 소견발표를 하는 장소에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시설물·인쇄물, 그 밖의 선전물을 설치·게시 또는 첩부할 수 없다.

**제27조(기부행위)** 이 규정에서 “기부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제5조에 따른 선거권자나 그 가족(선거권자의 배우자, 선거권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조에 따른 선거권자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

**제28조(기부행위제한)** ①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③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선거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제29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상의 행위

가. 기관·단체·시설(나목에 따른 본회를 제외한다)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물품을 그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이하 나

목에서 같다)

나. 본회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규정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본회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다.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외에 법령에 근거하여 물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 2. 의례적 행위

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을 제외한다)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다.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소속 기관·단체·시설(본회는 제외한다)의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의 정관 등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바.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3.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부의금품(1인당 5만원 이내), 음식물(3만원 이내), 답례품(1만원 이내) 및 의례적인 선물(3만원 이내)의 금액범위로 한다.

**제30조(기부행위제한기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이하 "기부행위제한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20년 1월 15일의 전 60일(2019년 11월 16일)부터 선거일까지

2. 규약·규정 등에 따른 재선거, 보궐선거: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31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 본회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제32조(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회장으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의 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단, 공개된 체육단체 사무실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연설과 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된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 제5장 투표 및 개표

**제33조(선거방법 등)** ① 선거는 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記票)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표로 한다.

**제34조(진행순서)** ① 선거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한다.

1. 선거안건의 부의선언
2. 회장 후보자의 소견발표
3. 투표 및 개표 요령의 안내
4. 투표
5. 개표
6. 당선자 결정
7. 당선 선포

**제35조(투표방법 등)** ① 투표는 후보자 전원을 기재한 투표용지('별지 제 11호 서식')에 의하여 등록된 후보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② 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의 참여하에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 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표로 한다.

③ 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접은 후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투표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제36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나 본회가 선거일 전일까지 준비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성명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직인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③ 투표용지에 인쇄할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의 게재순위에 따라 "1, 2,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적는다.

④ 제3항의 후보자의 게재 순위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추첨으로 결정하되, 추첨순서는 후보자 등록순서에 의한다.

⑤ 후보자나 대리인이 추첨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한다.

**제37조(투표안내문의 발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 투표할 수 있는 시간,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투표절차, 그 밖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을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선거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38조(투표시간)** ① 투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 투표를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 단아야 한다.

**제39조(투표·개표의 참관)** ① 후보자는 선거인 중에서 투표소에 2명 이내의 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개표소에 2명 이내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별지 제12호 서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표참관인은 투표참관인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후보자가 제1항에 따른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투표 및 개표 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 밖에 없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이 될 때까지 선정한 사람을 참관인으로 한다. 이 경우 참관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본인승낙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본회의 임직원은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⑤ 투표·개표 참관인은 선거사항에 간섭하거나 투표권유, 선거운동,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개표방법)** ① 개표는 투표가 완료된 때에 개시한다.

② 개표 사무는 본회 직원의 보조를 받아 실시한다.

③ 개표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한다.

1. 투표수의 확인

2. 유·무효 투표지의 구분
3. 후보자별 집계

4. 계표된 투표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효력을 확정한다.

**제41조(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후보자의 난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하거나 2인 이상의 후보자의 난에 기표한 것
  3. 어느 후보자의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4.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다른 표시를 한 것
  5. ○표를 하고 그 밖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6. 선거인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공개한 것
- ② 투표의 효력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42조(개표결과 보고서 작성)** 선거관리위원은 개표가 끝난 때에는 개표결과 보고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제43조(기탁금의 처리)** 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사망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전액을 반환(선거 종료 후 후보자 자격 상실)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0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본회에 귀속한다. 단,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되거나, 후보자 등록 서류를 고의로 조작 또는 중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작성 제출한 것이 발견되어 등록무효인 경우, 사퇴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선인의 기탁금은 반환한다.

## 제6장 당선인 결정

**제44조(당선인 결정)** ①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45조(당선무효)** 회장 당선인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당선 효력이 상실된다.

**제46조(회장 당선인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당선인이 결정되면 선거일 다음날에 즉시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거 회장 당선인을 시·군·구체육회 홈페이지 및 건물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7조(선거 및 당선 효력 이의신청)** ① 선거 또는 당선 효력에 대한 이의신청, 선거 사무의 관리집행 상의 하자 또는 투표 효력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② 이의제기를 하려는 후보자 및 선거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투표 효력에 관하여는 선거일을 말한다)부터 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별지 제15호의2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이의제기를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제기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정 내용을 지체없이 이의제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제재조치)**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기본규정 및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중지, 경고, 시정명령,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 적발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후보자의 등록무효 또는 당선무효

나. 선거권 박탈(선거인에 한한다)

다. 본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또는 위반행위자의 소속단체에게 징계 요청

라. 추후 선수·지도자·심판·동호인으로서의 등록 제한 및 대한체육회·체육단체(회원종목단체, 시·도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 시·군·구 종목단체, 읍·면·동체육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직원으로서의 채용·활동 제한(대한체육회·체육단체에 소

속되어 있지 않은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마.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바. 선거일 각 투표소에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게시

사. 같은 호 각 목의 제재는 병과 할 수 있다.

2.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경미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중지 요청 또는 경고, 시정명령(1차에 한한다)

나. 선거권자에게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공지

다. 선거일 각 투표소에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게시

라. 같은 호 각 목의 제재는 병과 할 수 있다.

3. 제16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본인서약서가 허위로 밝혀졌을 때,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 관계자가 후보자인 경우에는 영구제명 되며, 당선자의 경우에는 당선무효가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제재조치의 의결정족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에 해당하는 경우

가. 후보자의 등록무효 또는 당선무효

나. 선거권 박탈(선거인에 한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시·군·구동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또는 위반행위자의 소속단체에게 징계 요청

나. 추후 선수·지도자·심판·동호인으로서의 등록 제한 및 대한체육회·체육단체(회원종목단체, 시·도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 시·군·구 종목단체, 읍·면·동체육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직원으로서의 채용·활동 제한(대한체육회·체육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라.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중지 요청 또는 경고, 시정명령(1차에 한한다)

마. 선거권자에게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공지

바. 선거일 투표소에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게시

사. 같은 호 각 목의 제재 병과

④ 선거관리를 위탁받은 관할위원회가 선거 위반행위(위탁선거법 위반 포함)를 적발하여 본회에 통보할 경우, 본회는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결과를 관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장 보칙

**제49조(전자투표 및 개표)**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한 투표와 후보자별 득표수의 집계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표 및 개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 및 개표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선거인의 투표에 지장이 없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③ 전자투표 및 개표를 실시하는 경우 투표 및 개표의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른다.

**제50조(재선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후보자가 없는 경우

2. 당선인이 없는 경우

3. 선거관리위원회나 법원의 당선·선거무효결정(판결)이 있는 경우

**제51조(보궐선거)** ①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궐위된 날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궐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51조의2(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2조(그 외의 사항)** ① 본회는 2020년 1월 15일의 전 70일(2019년 11월 6일)까지 회장선거관리규정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 선거는 본회가 소재지 관할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선거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되며, 「위탁선거법」 및 그 시행규칙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본규정 및 이 규정에 따르며, 그 외의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소재지 관할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경우 본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영위원회라 칭한다.

**제53조(체육회의 시정 지시 이행)** 본회는 경기도체육회 기본규정 및 시·군 체육회 규정에 따라 회장선거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경기도체육회가 시정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2019. 10. 31.)**

(시행일) 이 규정은 경기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비 당 원 확 인 서**

1. 선거명: 과천시체육회장선거
2. 성 명: (한자: )
3. 생년월일:
4. 주 소:

위 본인은 ○년 ○월 ○일(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일 기준) 현재 기준 으로, 어느 정당의 당원도 아님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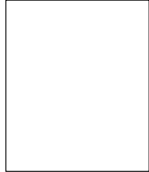
확 인 자 ○ ○ ○ ㉠

과천시체육회 귀중

### 신 분 증 명 서

(앞 면)

(뒷 면)

8.6 cm	NO. _____ <b>신 분 증 명 서</b>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5px 0;">         ← 3cm →          ↑ 4cm ↓   </div>
	직 위 성 명 과천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
← 5.4cm →	○ 소 속: 과천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 ○ 성 명: ○ 생년월일: 「회장선거관리규정」(제3조의1)에 따라 위탁선거 위반 행위의 혐의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에 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 또는 조사활동을 하거나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관계서류, 그 밖의 조사에 필요 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자임을 확인함. 년 월 일 과천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인

## 공 고

과천시체육회 제○대 회장 선거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회장 선거일
  - 일 시 :    년    월    일    시
  - 장 소 :
2. 회장 후보자 등록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시까지(○일간)
3. 선거운동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시까지(○일간)

년 월 일

과천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







제○대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부

년 월 일

연번	일자	후보자명	생년월일	직업 및 직위	주 소	전화번호	비고

제○대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접수증

◎ 후보자

- 성 명 : (한자 :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직업 및 직위 :
- 접 수 일 자 : 년 월 일
- 접 수 번 호 :

상기와 같이 접수 확인함.

-----절-----취-----선-----

접 수 증

- 후보자성명 : (한자 :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직업 및 직위 :
- 접 수 일 자 : 년 월 일
- 접 수 번 호 :

상기인이 년 월 일 실시하는 ○○체육회 회장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체 육 회 선 거 관 리 위 원 회

### 후보자 사퇴 신고서

- 후보자성명 : (한자 : )
- 생년월일 :
- 주소 :
- 직업 및 직위 :
- 접수번호 :
- 사퇴사유 :

본인은 년 월 일 실시하는 ○○체육회 회장선거의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후보자 (인)

과천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위법게시물의 삭제요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한자)		생년월일
	주소		
삭제요청 사항			
이의신청 사유			
<p>「회장선거관리규정」 제24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 ○ 인</p>			
과천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투표용지

연번	제○대 과천시체육회장 투표용지				
	기호	1	2	3	4
후 보 자 성 명					
기표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거인 투·개표 참관인 신고서

년 월 일 실시하는 회장선거의 투·개표 참관인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1. 후보자 성명 :
2. 참관인 인적사항

구분	번호	소 속	성 명	성별	생년월일	비고
투표 참관인						
개표 참관인						

년 월 일

신고자 : (인)

과천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본인승낙서

- 1. 소 속:
- 2. 직 위(직 급):
- 3. 성 명:
- 4. 생 년 월 일:
- 5. 주 소:
- 6. 전 화 번 호:

위 본인은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9조제3항에 따른 (투표·개표)참관인으로 위촉됨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승 낙 인 ○ ○ ○ 인

과천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개표결과 보고서

#### 1. 개표결과

기 호	성 명	득표수
1		
2		
3		
4		
무 효 표		
계		

후보자 는 년 월 일 실시한 제○대 과천시체육회 회장선거 개표결과 표를 득표하였기에 당선인으로 결정하였음.

이 개표결과 보고서는 사실대로 기록·작성하였음.

년 월 일

선거관리위원:	(인)	선거관리위원:	(인)
선거관리위원:	(인)	선거관리위원:	(인)
선거관리위원:	(인)	선거관리위원:	(인)
선거관리위원:	(인)	선거관리위원:	(인)
선거관리위원:	(인)	선거관리위원:	(인)

과천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 회장 당선인 공고

년 월 일 실시한 선거에서 결정된 제○대 과천시체육회 회장선거 당선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당 선 인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직업 및 직위 :

년 월 일

과천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당선·투표의 효력)·(선거사무관리)에 관한 이의신청서

이 의 제기자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이의사실	이의제기 내용		
	이의제기 사유		
<p>년 월 일 실시하는 과천시체육회장 선거에서 「회장선거관리규정」 제○조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이의제기자 ○ ○ ○ ㉠</p> <p>과천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p>			

주: 1. 이의제기 사유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제기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첨부합니다.



<b>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투·개표 참관인 제출 양식)</b>			
<p>○○선거관리위원회는 ○○ 체육회 선거 투표·개표 참관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p>			
<p><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p>			
구분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필수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선거일 투표·개표 참관인 본인 확인	<u>선거 후 법적 확인 관련</u> ○년 보관
	성명, 전화번호	선거 관련 안내문 발송	
<p>※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투표·개표 참관인으로의 선정 및 선거당일 본인확인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p> <p>☞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p>			
<p><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p>			
제공받는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의 수집·이용 목적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선거 민원업무 관련 처리	<u>선거 관련 법적 확인용</u> ○년 보관
<p>※ 위의 개인정보 제공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p> <p>☞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고지 받았습니까. (예, 아니오)</p>			
<p>년 월 일</p> <p>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p> <p>과천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p>			